

## 연구실적물 등 심사기준 상세사항 안내

### □ 「전공능력심사」 심사항목 및 점수 구분

| 구분 (70점)               | 심사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수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학력 및 산업체경력 (25점)    | 1-1. 학력(5점)<br>1-2. 산업체경력 근무기간(5점)<br>1-3. 산업체경력 직위(직급)(15점) | [5점-3점-1점]<br>[5점-3점]<br>[15점 ~ 11점]   |
| 2.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(35점)    | 2-1. 자기 기술(10점)<br>2-2. 산학협력 역량(10점)<br>2-3. 산학협력 활동계획(15점)  | [10점 ~ 7점]<br>[10점 ~ 7점]<br>[15점 ~ 8점] |
| 3. 산학협력 실적물 및 활동 (10점) | 3-1. 산학협력 실적물 및 활동 상세내역(10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0점 ~ 10점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□ 「전공능력심사」 평가기준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<b>I. 학력 및 산업체경력 (25점)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<b>1. 학력 (5점):</b> 최종 취득(졸업) 학위에 대한 정량적 평가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학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박사학위      | 석사학위   | 학사학위 |
|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점        | 3점     | 1점   |
| <b>2. 산업체경력 근무기간 (5점):</b> 산업체경력 근무기간에 대한 정량적 평가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년 이상    | 25년 이상 |      |
|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점        | 3점     |      |
| <b>3. 산업체경력 직위(직급) (15점):</b> 산업체경력 직위(직급)에 대한 정량적 평가 |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기업(공공법인) | 중소기업   |      |
| · 임원 이상<br>· 고위공무원급<br>· 책임연구원 7년 이상                  | 15점       | 13점    |      |
| · 부장급<br>· 서기관급<br>· 책임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점       | 12점    |      |
| · 차장급<br>· 사무관급<br>· 선임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점       | 11점    |      |

《산학협력중점교수(전문경력형) 전임교원》

※ 산업체경력은 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, 유사 경력 등의 인정 여부는 채용분야 주관 학부(과, 전공)회의 또는 주관 부서에서 결정한다.

※ 산업체 구분

- 대기업: 자본금 1,000억원 이상, 종업원 1,000명 이상 및 매출액 1,500억 이상인 기업
- 중소기업: 대기업 이외의 기업
- 공공법인: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으로서, 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(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(2019.01.25.))」 중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아래의 공공법인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준정부기관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개별법(상법·민법 제외)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

- 산업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, 채용분야 주관 학부(과, 전공)회의 또는 주관 부서에서 결정한다.

※ 직위(직급) 구분

- 해당 직위(직급)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가장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하며, 근무연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하위 직급의 경력을 인정한다.
- 직위(직급)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, 채용분야 주관 학부(과, 전공)회의 또는 주관 부서에서 결정한다.

## II.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(35점)

1. 자기 기술 (10점): 지원자의 인성, 장단점, 특기, 업무경험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

| 구분 | 탁월  | 우수 | 보통 | 미흡 |
|----|-----|----|----|----|
| 점수 | 10점 | 9점 | 8점 | 7점 |

2. 산학협력 역량 (10점): 산학협력 교육 운영,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수주 등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역량에 대한 정성적 평가

| 구분 | 탁월  | 우수 | 보통 | 미흡 |
|----|-----|----|----|----|
| 점수 | 10점 | 9점 | 8점 | 7점 |

3.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(15점): 본교 임용 이후 산학협력 관련 다양한 활동 및 실적 (취업·창업, 국책사업 수주 등) 추진과 이를 연계한 대학발전 기여 등을 기재한 활동계획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

| 구분 | 탁월      | 우수      | 보통      | 미흡    |
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점수 | 15점~14점 | 13점~12점 | 11점~10점 | 9점~8점 |

《산학협력중점교수(전문경력형) 전임교원》

Ⅲ. 산학협력 실적물 및 활동 (10점)

지원자가 제출한 산학협력 실적물 및 활동에 대한 정량적 평가이며, 심사점수는 인정되는 아래 해당 실적 및 활동의 점수 합계임(단, 점수는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)

| 세부 종류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수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특허                       | 국외등록 특허                   | 건당 10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내등록 특허                   | 건당 5점  |
| 기술이전                     | 1,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| 건당 8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  | 건당 4점  |
| 연구비 수주                   | 중앙부처 3,000만원 이상           | 건당 8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자체·공공기관·산업체 500만원 이상     | 건당 4점  |
| 산학협력 관련 포상               | 국가기관 포상                   | 건당 6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 포상           | 건당 4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기관(공공법인, 회사, 연구소 등) 포상 | 건당 2점  |
| 국가(공공기관)의 산학협력 관련 위원회 활동 | 국제기구 · 기관 위원회 활동          | 건당 4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단위 기관 위원회 활동            | 건당 2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 기관 위원회 활동    | 건당 1점  |

※ 산학협력 실적물 및 활동의 인정여부는 ‘산학협력중점교수(산학협력 연구형)’ 인정 기준을 적용하되,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분야 주관 학부(과, 전공)회의 및 주관 부서에서 결정한다.